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

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2. 6. 14.(화) 15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○ 발의일자: 2022년 6월 3일
- ○ 회부일자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○ 충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년 6월 단양에 이어 2022년 3월 음성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조리사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학교급식 조리실의 환기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- ○ 이에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와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○ 제3조 “교육감의 책무”에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(안 제3조제4항 신설)
- ○ 제11조의 제목 “(교육과 연수)”를 “(교육)”으로 변경함 (안 제11조)
- ○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조리장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(안 제12조 신설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○ 최근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, 최근 5년간 직종별 산업재해 현황(2017 ~ 2021) 조사 결과[1] 학교급식 조리장 내 산업재해가 다른 직종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과 위생관리시스템 구축, 급식종사자 작업노동력 절감 기구 구입,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기구 현대화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, 학교급식 조리장 내 환기 시설과 관리체계는 미흡한 상태[2]임.

○ 정부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

---

1) 직종별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(2017 ~ 2021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계
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	17	32	21	23	42	135
학교 시설물 등 유지·관리	5	2	1	4	1	13
학교경비 및 학생통학보조	1	2	3	4	2	12
청소업무	-	1	4	5	-	10
기타	11	9	13	13	1	47
합 계	34	46	42	49	46	217

재해유형별 5년간 산업재해 현황(2017 ~ 2021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계
넘어짐	11	14	18	19	14	76
부딪힘	-	3	3	1	3	10
떨어짐	6	3	2	2	-	13
끼임	-	5	-	1	4	10
물체에 맞음	2	1	-	3	1	7
절단·베임·찔림	2	5	2	4	3	16
이상온도 접촉	3	6	9	4	10	32
무리한 동작	4	4	-	6	4	18
근골격계질환	4	4	6	6	6	26
교통사고	1	1	2	1	-	5
폭력행위	1	-	-	1	-	2
업무상 질병(폐암)	-	-	-	1	1	2
합계	34	46	42	49	46	217

※ 자료제공: 충청북도교육청 노사협력과(2022. 5.)

2) 충청북도교육청은 2022 6월 현재 전체 505개 학교 대상 급식 조리장 환기장치 점검을 전수조사 중이며 점검결과는 7월 초 나올 예정임(자료제공: 충청북도교육청 노사협력과)

증가 추세[1]를 보임에 따라 학교급식 조리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심각히 하여, 지난해 12월 ‘학교 조리실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표준환기 방안 마련 연구’[2]를 실시하고 ‘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’을 제시하였으며, ‘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’ 정책[3]을 발표한 바 있음.

○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조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, 학교급식 조리장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의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

○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음.

- 이는 기존의 학교급식 식재료와 위생 측면에서의 안전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시설과 환경 조성 및 그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안전성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는 법적 조치라 사료됨.

○ 또한 학교급식 조리장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안 제12조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권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됨.

---

1) 학교 급식 종사자(과거 근무이력이 있던 자 포함) 31명 폐암 산재 신청 현황(산재 신청일 기준 ‘18년 2명, ’19년 2명, ‘20년 2명, ’21년 25명) : 고용노동부 자료(2021. 12. 8.)

2) 연구기관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연구기간: 2021. 4~11월, 연구결과 발표: 2021. 12.

3) 고용노동부,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및 교육청·학교 대상 점검실시(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급식종사자 대상 저선량 폐 시티(CT)촬영) : 고용노동부 자료(2021. 12. 8)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, 「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됨.

○ 충청북도교육청은 본 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조리장의 환기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